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평균 3퍼센트로 완화하고,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 시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동생활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고,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하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를 “재정경제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마약 또는 무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확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 또는 폐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소유·소지 또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건

2. 위조·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명서(신분증명서, 여권 등을 포함한다)
3.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문서·도화·사진, 음반·영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4. 물품의 종류나 크기, 변질·부패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또는 임시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제35조의5제1항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연고청소년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3.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임대주택을 반납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거주할 곳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제38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자리 알선 등 자립자활지원 업무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회의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이하 “협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조(협회의의 구성) ----- ----- ----- ----- -----.
1. <u>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기획예산처 · 국가안보실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u>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u>재정경제부 ·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기획예산처 · 인사혁신처 · 국가안보실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① (생략)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	② -----

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 또는 폐기-----.

1. 법률에 따라 소유·소지 또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건
2. 위조·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명서(신분 증명서, 여권 등을 포함한다)
3.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문서·도화·사진, 음반·영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4. 물품의 종류나 크기, 변질·부패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또는 임시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물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건

③ 제1항 및 제2항 -----

-----.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

3퍼센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등)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무연고청소년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
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
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
고 있는 보호대상자

3.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임대주
택을 반납하거나 계약이 해지

<신 설>

② (생 략)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④·⑤ (생 략)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되어 현재 거주할 곳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일자리 알선 등 자립자활지원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

-----.

<삭 제>

<u>로 특별임용된 경우</u> 2. <u>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u> <u>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u> <u>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u> 3. <u>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u> <u>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u> <u>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u> 4. ~ 7. (생략)	<u><삭 제></u> <u><삭 제></u> 4.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1